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66조 및 제67조의 휴학 및 복학의 신청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권자) 학(원)장은 소속 학생이 휴학 또는 복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사유 및 허가 요건 등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휴학기간 및 연한) ① 휴학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적용되고 방학을 포함하며, 연 단위 휴학기간은 매 학년도 3개 학기 이상인 학위과정에 적용된다.

② 휴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 6개 학기 또는 3년. 다만, 예과과정 및 편입학한 경우(의과대학 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및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각각 3개 학기로 한다.
2. 석사과정 : 4개 학기 또는 2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6개 학기로 한다.
3. 박사과정 : 6개 학기 또는 3년.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4개 학기로 한다.
4. 학사·석사통합과정 : 10개 학기 또는 5년. 다만,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및 전문석사과정 각각 6개 학기로 한다.
5. 석사·박사통합과정 : 8개 학기 또는 4년
6.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 복합학위과정 : 10개 학기

제4조(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학기간은 제3조 휴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1.10.25.]

1. 군휴학 : 병역의무 기간이 포함된 학기. 다만, 종강일 후 입영 또는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휴학학기로 본다.
2. 임신·출산휴학 : 2개 학기 또는 1년
3. 육아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
4. 질병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
5. 창업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개정 2023.2.21.]
6. 권고휴학 : 4개 학기 또는 2년

제5조(휴학 신청 기한) ①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등록 후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이 휴학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연

속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은 종강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휴학 신청 가능 학기) 휴학은 1회에 2개 학기 또는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휴학은 병역의무기간이 포함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권고휴학은 4개 학기 또는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10.25.]

제7조(군휴학 신청) ① 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보충역 등의 복무(이하 “군복무”라 한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군복무 시작일과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영통지서

2. 병역증

3. 복무확인서

4. 그 밖에 입영 또는 복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② 군복무 시작일이 종강일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부터 군휴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종강일 후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군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군휴학 전환) 군휴학 외의 사유로 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군복무 시작일이 종강일 이전인 학기부터 군휴학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복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임신·출산휴학 및 육아휴학) ① 여성인 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임신·출산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육아휴학은 학사 및 대학원과정을 통산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4개 학기 또는 2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제10조(질병휴학) ① 학생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장기 치료 및 요양(이하 “치료”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임신 16주가 경과된 후 유산·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학생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신 16주가 경과되어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휴학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진단서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 질병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3이 되는 날부터 신청일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치료를 받은 진료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학생이 1회에 2개 학기 또는 1년까지 질병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에 해당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여 학업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21.10.25.]

제11조(창업휴학의 요건 등) ① 창업을 한 학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2.21.]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한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개정 2023.2.21.]

2.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신설 2023.2.21.]

② 창업을 한 업종이 별표의 창업휴학 신청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창업휴학 제출서류) ①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별지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② 창업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이 허가받은 창업휴학과 같은 내용으로 창업휴학을 연속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2.21.]

제13조(창업휴학 허가 절차) ① 학(원)장은 소속 학생이 창업휴학을 신청한 때에는 교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서류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등을 실시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기 초에 개최되는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창업휴학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창업휴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체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창업휴학의 종료) 학생이 창업휴학을 허가받은 후 업종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휴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창업휴학 전환)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에 창업 준비를 위해 사용한 휴학(일반)에 대하여 2개 학기 또는 1년까지 창업휴학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휴학 신청 시에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2.21.]

제15조(권고휴학) 「서울대학교 학칙」 제110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학사지도위원회에서 권고휴학을 하도록 결정된 학생은 권고휴학을 할 수 있으며, 권고휴학은 재적 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16조(복학 신청 기한)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 개시 전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휴학자가 학기 개시 후에 전역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군복학) ① 군휴학한 학생이 군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 4분의 1 후에 전역예정인 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할 수 있다.

1. 수업일수 4분의 1 후부터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 증명서

나.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다.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2. 수업일수 4분의 1 후부터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 증명서

나.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다.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장 추천서

마. 학생 확인서

③ 제2항에 따라 학생이 복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복학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제18조(귀가조치자의 휴학기간 변경 등) ① 군휴학한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종강일 사이에 귀가한 경우에는 군휴학 기간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가일이 포함된 학기는 군휴학으로 본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귀가한 학생은 군휴학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종강일 후에 군복무를 시작하여 학기 개시 전에 귀가한 학생은 군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귀가복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휴학 기간을 변경한 학생은 복학 기한 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호, 2018.7.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2021.10.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23.2.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창업휴학 신청 제외 업종
(제11조제2항 관련)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2. 부동산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3. 숙박 및 음식점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4.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
5.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그 밖에 학생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비고 :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